



제439회국회(정기회)
제1차보건복지위원회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검 토 보 고

〈청소년 자살자 심리부검을 위한 자료 요청 근거 마련〉

■ 소병훈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제19465호)

2026. 9.

보 건 복 지 위 원 회

전문위원 신 은 호

목 차

I . 개요	1
II . 검토의견	3

I. 개요

1. 소병훈의원 대표발의안(의안번호 제19465호)

가. 제안경위

- (1) 제 안 자 : 소병훈의원 등 13인
- (2) 제 안 일 : 2026. 6. 24.
- (3) 회 부 일 : 2026. 7. 23.

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 따르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효과적인 자살예방정책 수립 및 자살자의 유족 등에 대한 심리적 지원 제공을 위하여 자살행위 전후의 심리·행동변화 등을 바탕으로 자살원인을 분석하는 심리부검을 실시할 수 있음.

한편, 2025년 성평등가족부가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과 함께 발표한 ‘2025 청소년 통계’에 따르면 2011년 이후 청소년의 사망원인 중 자살이 계속 1위를 차지하고 있고, 2023년에는 청소년 인구 10만명 당 청소년 자살자가 11.7명에 달하였는데 이는 2011년의 8.9명에 비하여 눈에 띄게 증가한 수치여서 청소년 자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대책 마련이 시급히 요구되고 있음. 그런데 효과적인 청소년 자살예방 대책을 마련하기 위하여는 심리부검 자료를 적극 활용하여 자살의 원인과 사례를 분석할 필요가 있으나, 현재 자살자 관련 자료·정보의 확보가

어려워 심리부검을 원활히 수행할 수 없음.

이에 심리부검 수행기관으로 하여금 청소년 자살자 심리부검에 필요한 자료·정보와 형사사법정보를 관계 중앙행정기관, 시·도 교육감 및 학교, 청소년 관련 기관, 경찰서 등에 요청하여 제공받을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안 제11조의2제3항부터 제5항까지, 제12조의3 제7항 및 제8항 신설 등).

Ⅱ. 검토의견

1. 개정안의 내용

□ 개정안은 심리부검 수행기관의 장이 청소년 자살자에 대하여 심리부검을 실시하는 경우 관련 자료 또는 정보의 제출을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시·도교육감, 학교의 장 또는 청소년 관련 기관의 장에게 요청할 수 있도록 하고(안 제11조의2제3항부터 제5항까지 신설), 경찰청장 및 해양경찰청장에게는 형사사법정보를 요청할 수 있도록 하면서(안 제12조의3제7항·제8항 신설),

제공받은 정보의 목적 외 사용 등에 대한 벌칙 규정을 마련(안 제25조제1항제1호 신설, 같은 항 제2호)하려는 것임.

현행	개정안
제11조의2(심리부검) ①·② (생략) <u><신설></u>	제11조의2(심리부검) ①·② (현행과 같음) ③ 제1항에 따른 심리부검 업무를 수행하는 기관(제2항에 따라 심리부검을 위탁받는 한국생명존중희망재단을 포함하며, 이하 “심리부검 수행기관”이라 한다)의 장은 청소년(「청소년기본법」 제3조제1호 본문에 따른 청소년을 말한다. 이하 같다) 자살자에 대하여 심리부검을 실시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자에게 심리부검에 필

요한 범위에서 청소년 자살자
관련 자료 또는 정보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청
을 받은 자는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1. 교육부장관, 보건복지부장관,
성평등가족부장관 등 대통령
령으로 정하는 관계 중앙행정
기관의 장

2. 특별시·통합특별시·광역시
· 특별자치시·도·특별자치
도의 교육감

3. 「초·중등교육법」 제2조
각 호에 따른 학교의 장 및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교육기관의 장

4. 「청소년복지 지원법」 제22
조에 따른 한국청소년상담복
지개발원의 원장

5. 「청소년복지 지원법」 제29
조에 따른 청소년상담복지센
터의 장

6. 「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
한 법률」 제12조에 따른 학
교 밖 청소년 지원센터의 장

7. 그 밖에 청소년 관련 기관으
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

<u><신 설></u> <u><신 설></u>	<u>관의 장</u> <u>④ 제1항에 따른 심리부검 업무에 종사하는 자는 제3항에 따라 제공받은 청소년 자살자 관련 자료·정보를 목적 외로 사용하거나 제3자에게 제공·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u> <u>⑤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심리부검의 전 과정에서 개인정보 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u>
제12조의3(형사사법정보의 제공 등) ① ~ ⑥ (생략) <u><신 설></u> <u><신 설></u>	제12조의3(형사사법정보의 제공 등) ① ~ ⑥ (현행과 같음) <u>⑦ 심리부검 수행기관의 장은 제11조의2에 따라 청소년 자살자에 대한 심리부검을 실시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경찰청장 및 해양경찰청장에게 형사사법정보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다.</u> <u>⑧ 제7항에 따른 형사사법정보의 제공 요청 및 제공 등에 관하여는 제1항 단서 및 제2항부터 제6항까지를 준용한다. 이 경우 “보건복지부장관”은 “심리부검 수행기관의 장”으로 본다.</u>

제25조(벌칙)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u><신 설></u> 1. <u>제12조의3제5항을 위반하여</u> 형사사법정보를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하거나 제3자에게 제공한 자 2. 3. (생략) ② ~ ④ (생략)	제25조(벌칙) ① ----- ----- ----- -----. 1. <u>제11조의2제4항을 위반하여</u> <u>자료 또는 정보를 목적 외의</u> <u>용도로 사용하거나 제3자에게</u> <u>제공한 자</u> 2. <u>제12조의3제5항(같은 조 제8</u> <u>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u> <u>한다)</u> ----- ----- ----- 3. 4. (현행 제2호 및 제3호와 같음) ② ~ ④ (현행과 같음)
--	---

2. 검토의견

- 최근 10년간(2015년~2024년) 청소년(9~24세) 자살사망자 수는 연평균 850명 내외이고, 인구 10만 명당 자살률의 경우 2021년 11.7명으로 가장 높았고, 2022년에서 2024년에도 2015년 대비 약 1.5배 높은 10.8명에서 11.7명 수준을 보이는 것으로 나타남.

< 최근 10년(2015년~2024년) 청소년 자살사망자 수 및 자살률 추이 >

[단위: 명(인구 10만 명당)]

구분	2015년	2016년	2017년	2018년	2019년	2020년	2021년	2022년	2023년	2024년
자살사망자 수	708	744	722	827	876	957	985	884	931	852
자살률	7.2	7.8	7.7	9.1	9.9	11.1	11.7	10.8	11.7	10.9

자료: 보건복지부[출처: 국가데이터처, 2015~2024년 사망원인통계]

- 이처럼 청소년 자살률이 높은 수준에서 고착화된 상황에서 개정안 제11조의2제3항부터 제5항까지와 제12조의3제7항 및 제8항은 「청소년 기본법」 제3조제1호 본문¹⁾에 따른 청소년 자살자에 대한 심리부검에 필요한 자료, 정보 또는 형사사법정보를 관련 기관에 요청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

- 현행법 제11조의2²⁾에 따른 심리부검이란 자살 유족의 진술과 기

1) 「청소년 기본법」

제3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청소년”이란 9세 이상 24세 이하인 사람을 말한다. 다만, 다른 법률에서 청소년에 대한 적용을 다르게 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따로 정할 수 있다.

2)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법률」

제11조의2(심리부검)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효과적인 자살예방정책을 수립하고, 자살자의 유족 및 지인에 대한 심리적 지원을 제공하기 위하여 자살행위 전후의 심리·행동변화 등을 바탕으로 자살원인을 분석하는 심리부검을 실시할 수 있다. 이 경우 미리 자살자의 유족 및 지인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②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제12조의4에 따른 한국생명존중희망재단에 제1항에 따른 심리부검을 위탁할 수 있다.

록을 통해 자살사망자의 심리·행동 양상 및 변화를 확인하여 자살 원인을 추정·검증하고, 근거 기반 정책을 수립하기 위한 제도로, 2015부터 2025년까지 연평균 146건, 총 1,602건이 시행되었음.

< 2015년~2025년 심리부검 실시 현황 >

(단위: 명)

구분	2015	2016	2017	2018	2019	2020	2021	2022	2023	2024	2025	누계
자살 사망자	121	92	77	105	181	139	106	159	143	151	160	1,281
면담 참여자	153	112	91	124	211	159	113	169	148	158	164	1,602

자료: 보건복지부(심리부검 전체 실적으로, 특수 직군 실적 포함)

청소년 심리부검의 경우 과거 교육부 주관으로 시범 실시³⁾ 후 중단되었으나, 보건복지부 주관으로 재시행하기 위하여 관련 기관과 함께 매뉴얼을 공동 작성하고, 협력체계를 구축⁴⁾하였으며, 기록물 분석 및 유족 면담 도구를 개발하여 2026년 9월부터 시범 시행 후 2027년부터 정식 시행할 예정인 것으로 파악됨.

□ 개정안은 수행기관의 자살원인 분석을 위한 심리부검에 필요한 자료가 보다 용이하게 확보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청소년 자살예방 정책 수립과 자살자의 유족 등에 대한 심리적 지원업무의 실효성을 강화할 수 있다는 점에서 타당한 측면이 있는 것으로 보임.

□ 다만, 심리부검의 공익적 목적을 고려하더라도 청소년 심리부검을 위하여 요청되는 자료에는 자살자의 유가족 등 다른 사람의 개인정보가 포함될 수 있어 개인정보 자기결정권 침해를 최소화할 필요가 있으므로,

3) 2015년~2022년: 누적 37건 실시(자료: 보건복지부)

4) 보건복지부, 교육부, 성평등가족부, 경찰청, 한국생명존중희망재단

요청할 수 있는 자료의 범위와 종류를 법률에서 명확히 규정하거나 법률에서 대통령령으로 위임하는 근거를 마련하고 그 세부적인 사항을 대통령령으로 정함으로써 자료 요청의 범위와 한계를 명확히 할 필요가 있어 보임.

- 한편, 개정안은 제11조의2제4항을 신설하여 청소년 자살자 관련 자료·정보의 목적 외 사용과 제3자 제공·누설을 금지하고, 이를 위반할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벌칙 규정을 신설(안 제25조제1항제1호)하고 있는데,

심리부검 자료는 사망 장소, 자살 방법, 정신질환 치료력, 가정 문제 등과 관련한 민감한 정보를 다수 포함하고 있어 형사사법정보와 대등한 수준의 비밀성이 요구된다는 점을 고려할 때,

현행 형사사법정보의 목적 외 사용이나 제3자 제공의 경우⁵⁾와 같은 수준의 벌칙을 마련하는 것은 필요한 조치인 것으로 보임.

- 참고로, 개정안과 유사한 취지의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김윤의원 대표발의, 의안번호 제2216567호)이 보건복지위원회에 회부되어 있으므로 함께 논의할 필요가 있음.

5)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법률」

제25조(벌칙)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제12조의3제5항을 위반하여 형사사법정보를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하거나 제3자에게 제공한 자
2. 3. (생략)

3. 관계 부처 및 관련 단체 의견

□ (보건복지부) 청소년 심리부검을 위한 정보요구 근거 마련 및 개인정보보호라는 법안 취지에 동의하나, 기존 자살예방법 및 개인정보보호법 법체계 및 규율 범위 등을 고려할 필요가 있음.

□ (개인정보보호위원회) 「개인정보 보호법」 제2조제1호에 따르면, 개인정보는 “살아 있는 개인에 관한 정보”로, 자살자는 이미 사망한 사람이므로 「개인정보 보호법」의 적용 대상이 아님.

다만, 심리부검을 위해 요청할 수 있는 자료에는 자살자의 유가족 등 다른 사람에 관한 개인정보가 포함될 수 있으므로 요청할 수 있는 자료를 법률에 명확히 규정하거나, 법률에서 대통령령으로 위임하는 조항을 신설하고 대통령령에 세부적인 사항 규정 필요

또한, 심리부검 자료에 포함된 제3자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처벌 규정의 적용 관계를 명확히 하고 법체계의 정합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벌칙 적용 시, 개인정보에 관하여는 「개인정보 보호법」이 적용되도록 정비 필요

□ (경기도자살예방센터) 심리부검 자료 보호대상을 전 연령의 자살 사망자 관련 자료·정보로 확대하여 비밀유지 및 목적 외 사용 금지 의무를 명확히 규정할 필요

형사사법정보 제공 요청 대상 기관을 경찰청장 및 해양경찰청장이외에 보호관찰소 및 소년보호기관 등을 관할하는 법무부장관과 그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까지 포함하도록 규정 및 청소년 심리부검 시행 시 보호자 등 성년자 동의권

자의 범위 명확히 할 필요

법률에는 미성년 자살사망자의 동의권자 범위와 절차에 관한 위임 근거를 두고, 구체적인 동의 방법 및 세부 기준은 대통령령 또는 심리부검 매뉴얼(안내문)에 반영하는 것이 필요

- (초등교사노동조합·세종교육청) 교원 면책 및 소송 차단 안전장치 필요 및 학교의 행정 업무 부담 완화를 위해 교육청을 통한 절차 일원화·표준화, 민감한 정보 보호의 한계 설정 및 교사의 교육적 재량권 보호

학생의 정서행동특성검사나 상담 일지 등 극히 민감한 개인정보를 무제한 요구하지 못하도록 법적 한계선을 명확히 해야 함. 학교생활기록부는 담임교사의 고유한 교육적 판단에 따른 재량 영역이므로 사후에 타 기관이 분석 도구로 삼는 것은 교사의 전문성을 위축시킬 수 있으므로 원칙적 비공개(최소화) 필요함

- (대구교육청) 유가족 사전동의와 충분한 심리지원 보장 조항 필요
- (인천교육청) 자료 제공 범위와 절차에 대해 구체적인 규정 필요, 자료의 보관·파기 기준, 접근권한 관리 등 개인정보 보호조치를 시행령 등에서 명확히 규정하여 학생과 유족의 권익 보호 필요
- (충남교육청) 심리부검 결과의 다층적 해석 및 정책 환류 조항 신설, 자료 제출 범위와 절차, 유족 및 관계자의 권리보장, 형사사법 정보의 사용 제한을 법률에 구체화 필요

문 의 처

02)6788-5498
